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61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
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

1. 인구감소지역

구분	인구감소지역(92개)	인구활력+지역
전남광주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영광군
부산	금정구, 서구, 영도구	동구
대구	군위군, 남구	서구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2. 인구감소관심지역

구분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인구활력+지역
전남광주		동구
부산	북구, 중구	
인천		제물포구
대전		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	포천시	
강원	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김천시, 예천군, 칠곡군	경주시
경남	사천시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주기)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여건이 개선된 지역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 기존의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78호(2026. 1. 1.)는 폐지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